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지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410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길영,
김동욱, 김원태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박성연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서 약물을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「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함(2025.12)에 따라 조례의 약물에 대한 규정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는 ‘약물’을 변경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 서의 ‘약물’로 함(안 제5조제2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”를 “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또는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</p> <p>③ (생 략)</p> | 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약물”을 「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에서 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”로 규정함(2025.12)에 따라 본 조례의 약물에 대한 규정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시의회사무처 | 재정분석과 |
| 재정분석과장 | 이 선 희 |
| 추계세제팀장 | 김 중 헌 |
| 추계분석관 | 권 봉 수 |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